	76764	보	도 자 료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적신			
국토교통부		배포일시	2019. 9. 2.(월)	모나나는 성무			
			총 5매(본문3)			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A	·과장 한명희, 사무관 현기창, 주무관 공민규 ·☎ (044) 201-3584, 3576				
보도일시		2019년 9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2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		

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

- 「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」('20~'24년) 수립-

-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향후 5년간 로드맵으로 "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조기정착" 비전과 3대 목표 제시
 - ① 지반침하 발생건수 50% 감축 : ('18) 338건 → ('24) 169건
 - ②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% 달성 : ('16) 60% → ('24) 90%
 - ③ 지하공간통합지도 100% 구축 : ('18) 15개 특광역시 → ('24) 전국 162개 시·군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 침하*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「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」('20~'24)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 - * 지반침하건수 : ('14) 69건 \rightarrow ('16) 255건 \rightarrow ('18) 338건
 - 본 계획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'18.1월 시행)」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,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다.

- □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 - 첫째,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**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**한다.
 -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여 **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** 중심으로 운영하고,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*들을 개선한다.
 - * 협의기간 장기화, 협의 시기 조정, 협의 완료 후 굴착·보강공법 변경 등
 - 또한,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*과 지하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.
 - *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율('18) : 98%, 평균 보완기간 : 29.7일
 - 둘째, 연구개발, 교육강화, 인력육성 등 체질개선을 통해 **지하**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.
 -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.
 - 셋째,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**지하정보**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.
 -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*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'23년까지 전국 162개 시·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한다.
 - * (**지하시설물**) 상하수도·통신·전력·가스·난방, (**지하구조물**) 공동구·지하철· 지하보도·지하차도·지하상가·지하주차장, (**지반**) 시추·관정·지질 등

- 또한,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 하고 웹툰,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해 나갈 계획이다.
- □ 국토교통부 **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**은 "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**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**하여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"라고 밝혔다.
 - 한편 고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·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·군·구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현기창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

비전

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조기정착

주요 목표

- 지반침하 발생율 50% 감축
- * 지반침하 발생건수 : ('18) 338건 → ('24) 169건
-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% 달성
- *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(국토기술진흥원) : ('16) 60.8% → ('24) 90%
- 지하공간통합지도 100% 구축
 - *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: ('18) 15개 특광역시 → ('23) 전국 162개 시·군

추진 저략 [3]

중점 추진 과제 [8]

전략 I

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

중점 추진 과제

- □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
-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
- ③ 지하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

전략 Ⅱ

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

중점 추진 과제

- Ⅱ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
- ② 지하안전관리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

전략 Ⅲ

지하안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

중점 추진 과제

- Ⅱ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- ②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
- ③ 국민 소통형 지하안전 홍보 활성화

참고2 지반침하 발생현황

□ 전국 지반침하 발생현황

(단위 : 건)

시도별	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합 계	1,127	69	186	255	279	338
서울시	135	5	33	57	23	17
 부산시	72	9	8	5	20	30
대구시	21	0	2	2	12	5
인천시	32	2	6	2	12	10
광주시	60	1	3	15	13	28
대전시	64	0	6	18	36	4
울산시	26	3	3	6	8	6
세종시	7	0	0	3	1	3
경기도	232	17	56	61	19	79
	202	30	33	53	45	41
충청북도	120	1	3	1	55	60
충청남도	17	1	2	3	8	3
전라북도	24	0	6	10	3	5
전라남도	27	0	7	1	8	11
경상북도	25	0	1	1	1	22
경상남도	51	0	14	17	10	10
제주도	12	0	3	0	5	4

[※] 지하안전법 시행('18.1.1)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(시행령 제36조제1항)에 따른 1. 면적 1m²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, 2.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·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